



외국민간 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 활동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회장

趙基東

1. 카바의 연혁

카바란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의 약칭으로 “외국민간 원조기관 한국연합회”라 불리운다. 현재 13개국 61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본 연합회는 1952년에 7개 기관이 모여 발족을 보게 되었고 2년후인 1954년에 한미재단으로부터 25,000달라의 기증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세워 다음 해인 1955년에는 사무국을 두어 비로서 연합회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64년에 이르러 카바의 회원단체는 70여 기관으로 늘어났고 이중 28개 단체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업등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진 기관들이었고 42개 단체들은 주로 기독교 복음전파 즉 포교라는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사업에 치중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구호,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는 61개 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경제의 성장과 자립경제로의 발돋움이 외원의 축소 및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므로써 카바의 회원단체가 점차 축소일로의 경향에 있다.

2. 카바의 기능

카바는 각 기관들이 한국인에 대한 기여와봉사를 중대 강화키 위하여 회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보건, 교육,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유대를 갖고 효과적

으로 협조, 유합된 단체로서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교량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간행물에 의한 회원 상호간의 정보제공으로서 정기적으로 원간지 카—바 뉴스가 발간배포되고 있으며 월례총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회원 각자에게 배부되어 불참자라 할지라도 그날의 토의 사항 및 운영에 대한 회의내용을 파악케 한다. 통계정보는 회원상호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수립하여 편집 발행한다.

카바는 매월 셋째 수요일을 정기월례총회일로 정하고 61개 회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이사회의에 제의된 안건의 가결 및 사업활동에 관한 상호간의 의사교육 카바 회원단체들을 위한 연합행동으로서의 정부와의 관계등 기타 여러가지 사업활동에 관한 문제들이 수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차대회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은 16차 대회가 된다.

사업활동은 주로 각 기관별로 행해지지만 특별한 경우엔 카바자체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실례를 들어본다면 5개분과위원회 중 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1969년 11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5분까지 30분간 KBS의 “희망의 중계실”을 통하여 “매스콤”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간벽지의 농어민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보건교육 및 계몽운동을 보건사회부 보건과와 각 대학교의 교수들의 후원으로 3개월간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 청취자들에게 설문의 형식으로 의견을 조사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절대적인 찬성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 이 “프로그램”을 더 연장하기 까지 한적도 있다. 또한 삼남 지방의 한해 이재민들을 돋기 위하여 카바에서는 “한해 구호 위원

회”를 조직하여 위원장 조기동씨와 “헬렌 밀러” 여사가 나주군 6개부락을 시찰 현지답사를 한 후 카바 월례 총회시 현지답사한 것을 보고 현지한 해민들에 대한 구호의 손길이 불가피함을 역설, 카바가 이에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동의함으로써 전남 나주군 청사내에 한해 구호사무소를 설치하고 기독교 세계 봉사회, 기독교 개혁선교부, 광주 기독병원에서 사회사업가 3명을 파견 이재민들에게 “카운셀링”을 하는 한편 구호물자 배정관리에 대책을 세우고 이재민 구호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카바 기관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협조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이 21개 기관에서 6,330,886원이 기증되었고, 의류, 식료 등 물자지원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천 5백만원에 달했다.

3. 카바의 조직

한국에 있는 외국인 원조단체중 보건사회부에 의원단체로서 등록을 위한 모든 기관은 카바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어떤 기관이 카바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 기관의 서류(정관 및 재정의 기반) 일체를 이사회에서 심사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유명무실한 외국인 사회사업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사업이란 명목을 위장하여 사회에 이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기관이 없다고만 볼 수 없기 때

문에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반위에 사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카바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1) 사회복지 위원회 2) 보건분과위원회, 3) 구호분과위원회, 4) 교육분과위원회, 5) 지역사회개발 위원회이다. 이들 5개분과 위원회는 카바 월례총회때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각 분과별 토의를 갖고 10시 45분부터 5개 분과가 한 자리에 모여 전체회의를 갖는다. 1971년에 접어들어 카바 기관들의 사업활동의 축소 본국 철수 등으로 인해 5개분과를 종합 축소시켜 사회복지 분과와 보건분과의 2개 분과로 하였다.

카바의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재무관 1명, 서기 1명, 각 분과위원회 회장 1명씩으로 카바 운영전반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가결할 수 없는 중대 안건은 월례총회때 각 기관 대표자들이 모인 석상에서 가결한다. 이들 임원은 완전 명예직으로서 임기기간중 카바를 위해 헌신봉사한다.

임기는 1년이며 6월년차 총회때 선출되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이며 재선될 수 있으나 두가지 직책을 겸할수 없으며 중간공석일 경우엔 어느 때나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잔여기간을 채우도록 한다.

너무 과히 알고자 하지 말라.

거기서 큰 분심 거리가 많이 생기고 많이 속는다.

지식이 있는자는 남에게 유익하게 뵈고자 하고

지혜롭다는 청찬 듣기를 원한다.

안다해도 그다지 영혼에 유익하지도 않거나 혹 아주 무익한 것도 많다.

— 邇 主 聖 範 —